)

제114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(화상) 개최 계획

□ **일시·장소**: '24.12.2.(월), 14:00~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(별관 4층)

* 회의방식 : 비대면 화상회의

□ **참석 대상** :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

┌ (위원회) 총무위원 회의실 출석 / 위원장·위원 등 6명은 사무실(자택 등)에서 온라인 출석

└ (해경청) 차장, 기획조정관, 안건 소관 국·과장, 기획·법무담당관 위원회 출석

□ 상정 안건(심의의결 6건, 보고 1건)

[심의·의결 6건]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부서
1	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안	• 경력경쟁채용의 제한요건 중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경과의 기준일*을 '공고일'로 통일 * (기존)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기준일 → (개선) 공고일 • 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※ (대상) △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△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△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	
2	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	· 신체검사 시 마약 등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· 수영평가 방법을 남녀공통 통합점수제로 변경(26.1월 시행)	교육 훈련
3	예규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 일부개정안	・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(인사·채용분야 학계 교수 또는 공무원) ・신체·체력검사서(별지)에 문신, 약물검사란 및 50미터 수영평가에 대한 점수기준 등 추가	
4	예규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」 일부개정안	· 시험성적순으로 최종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객관식 시험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 개선*('26년 시행) * (개선) 모든 응시자 대상 근평점수를 반영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	
5	훈령	「(해양경찰청)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에 따른 '고소·고발사건' 수사상황 통지주기와 동일하게 '입건 전 조사' 통지주기 변경 ※ (기존) 매 1개월 → (개선) <u>최초 3개월, 이후 매 1개월</u>	
6	훈령	「(해양경찰청)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 「경찰공무원법」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※ (기존) 경찰간부후보생 → (개선)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・수사경과 운영에 관한 기준 변경 ※ (주요내용) △ 신임교육 중인 경위순경 수사경과 부여 가능 △ 본청 근무자 수사경과 선발 가능 △ 경과 유효기간 삭제 등 	수사 기획

[보고 1건] 12월 주요 업무 보고(기획재정)